##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

제정 2002. 12. 09. 고성군 고시 제2002-69호 개정 2003. 06. 18. 고성군 고시 제2003-39호 개정 2006. 01. 27. 고성군 고시 제2006-42호 개정 2007. 04. 19. 고성군 고시 제2007-16호 개정 2013. 10. 28. 고성군 고시 제2013-80호 개정 2016. 02. 03. 고성군 고시 제2016-09호 개정 2016. 06. 29. 고성군 고시 제2016-58호

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(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)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06. 29.

## 고 성 군



제 1 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과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자(선원포함) 및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 3 조(영업시간)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(이하 "낚시어선"이라 한다)의 영업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.

제 4 조(영업구역) 낚시어선의 제한구역은 북위 38°33′이상으로 하되, 영업해역은 육지해안선으로부터 연안 7마일까지로 한다. 단, 2톤 미만 선외기 설치 낚시어선은 육지해안선으로부터 연안 3마일까지로 한다.

제 5 조(안전운항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,「해사안전법」,「항만법」,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유어객을 안 내하는 행위를 금한다.
- 2. 낚시어선에 승선한 선원 및 승객 전원에게 영업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, 착용 거부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.
- 3.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갯바위 및 간출암, 무인도서 등에 승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를 금한다.
- 4.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양경비안전 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5. 낚시어선업자(선원포함)는 출항 전 항해·통신·기관·추진 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낚시어선의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.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시내용 및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.
- 3.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바다에 유류·분뇨·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한다.
- 5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금한다.
- 제 6 조(기타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낚시를 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킨 후 출항하여야 한다.
  - 1. 낚시 어선의 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어선업자(선원 포함)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- 2. 낚시 승객은 선상에서 낚시 중 기상악화 예견 등으로 낚시어선업자(선원 포함)의 안전대피를 위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3.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'승선자 명부' 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,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작성을 요구하고 허위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- 4. 낚시어선업자 선원은 승선하려는 낚시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 유지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 증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5. 낚시승객은 승선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 제 시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
- 6.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·군의 관할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·군수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폐지고시)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의한 고시 제2013-80호 「낚시 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」는 폐지한다.